

의안번호	제 44 호
의결년월일	1996. 5. 28. (제 44 회)

의 결 사 항	의안 가결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



晋州圈行政協議會規約(案)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년월일	1996. 4. 20.

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(안)

의안
번호

345

제출년월일 : 1996. 4. 20.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42조1항 및 제148조
- 동법시행령 제48조 및 제54조
- 법률 제4774호('94. 8. 3) 도, 농 통합형의 통합시 출범

사유

- 통합시 출범에 따라 '88. 11. 1 제정되어 운영된 진삼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 명칭 및 구성등의 내용이 현실과 일치하지 못하고 있으며
- 민선단체장 출범에 따른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개정비하여 활성화 방안 모색

2. 추진과정

- 진삼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 구성 : '88. 11. 1
- 행정협의회 정비의 필요성 거론(진주시, 사천시, 고성군기획실장)
- 행정협의회 정비에 따른 회의개최
 - 회의일시 : '96. 3. 15. 15:00
 - 회의장소 : 진주시청
 - 참석대상 : 진주시, 사천시, 고성군, 산청군(기획실장)
 - 내용 : 행정협의회 규약정비에 따른 초안작성 심의

3. 주요골자

- 행정협의회 명칭 변경
 - 진삼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(당초) → 진주권행정협의회(변경)
· 진주시+진양군 = 진주시, 삼천포시+사천군 = 사천시(당초명칭과 현실 불일치)
- 협의회 구성
 - 진삼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 : 진주시장, 진양군수, 삼천포시장, 사천군수, 고성군수
 - 진주권행정협의회 : 진주시장, 사천시장, 산청군수, 고성군수

4. 심의의결요청(안) : 별첨

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 "안"

제1조(목적) 이 규약은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행정협의회는 진주권 행정협의회 (이하 '협의회'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3조(구성) 협의회는 진주시장, 사천시장, 고성군수, 산청군수로 구성한다.

제4조(회장) ① 협의회의 회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참석) ① 시장·군수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그 대리자를 선임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한 대리위원은 시장·군수가 발급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(전체회의를 말함)와 수시회(관련단체간 부분회의를 말함)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상·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며, 수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협의안건은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참고인 배석) 협의안건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으며 의견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협의사항)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.

1.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
2.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
3. 도로의 신설 및 개수·보수
4. 버스노선의 신설, 변경 및 폐지
5. 상·하수도 시설의 설치
6.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
7. 자원의 개발,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
8. 공공시설의 설치, 관리에 관한 사항
9. 기타 본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9조(자문위원) ①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자문위원은 유관기관·단체의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
제10조(협의사항의조정)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은 2회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.

제11조(실무협의회) ①협의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,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회의록) 회의록은 간사가 기록하여 다음회의에 보고하고,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3조(경비부담) ①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등일 비율로 부담한다.

②협의에 의한 공동사무의 처리나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.

제14조(회계) ①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간사가 경리한다.

②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 회의 때마다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.

제15조(간사) 간사는 회장이 속하는 기획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.

제16조(규약개정)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한다.

제17조(운영규정)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약은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규약의 폐지) 진상연담권 행정협의회 규약은 이 규약시행일부터 폐지한다.

③(경과조치) 종전 진상연담권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 규약에 의거 협의한 것으로 본다.